#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05일, 양문석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0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양문석 의원)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br>1.·2. (생 략)<br>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br>4. (생 략)<br>② ~ ⑤ (생 략) |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 ----------.<br>1.·2. (현행과 같음)<br><삭 제><br>4. (현행과 같음)<br>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은「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13조[1]에 따라 지역신문[2]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유통구조 개선,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정보화

1)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지원 등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4년 기금 규모는 약 98억원임.

현행법 제16조는 지역신문이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등을 포함한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음.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요건(「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한편, 한국ABC협회는 국내 신문·잡지 등의 부수공사(部數公査)[3]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로서, 동 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는 주로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과정에서 활용되어 왔음.

3) 부수공사(ABC, Audit Bureau of Circulations)는 신문, 잡지, 뉴미디어 등 매체사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부수 및 수용자 크기를 조사,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광고주가 합리적인 광고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매체량(부수, 접촉자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9341호)

**제5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신문 및 잡지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 요청 대신 에이비시부수공사[ABC부수공사(사단법인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실시하는 신문·잡지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상기 시행령 제5조는 시행령 개정(2021.11.9.)으로 삭제되었음.

그런데,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에 관한 신뢰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문체부는 동 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한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로 인해 부수공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울러 종이신문에서 정보통신망 중심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문체부는 한국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선정 과정에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서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 활용을 명시한「정부광고법 시행령」제5조를 2021년 11월 삭제한 바 있음.

개정안은 기금 지원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재 정부의 사무검사 결과 부수공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정부광고 매체선정 과정에서의 활용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사가 한국ABC협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한국신문협회는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할 경우 매체영향력 등을 산출하는 정량적 지표가 결여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마련한 후에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유상판매 신문부수 등을 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 기준으로 명시한「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 기준[4]도 2021년 12월 삭제된 바 있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4) 유상판매 신문부수는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되어 온 바, 이를 삭제한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별표] 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

3. 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가. 유상판매 신문부수 및 해당 지역신문이 발행하는 전체 신문부수에서 유상판매 신문부수가 차지하는 비율(2021.12.7. 삭제)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소위원장)

원안가결

## 6. 심사결과

원안의결

##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br>1.·2. (생 략)<br>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br>4. (생 략)<br>② ~ ⑤ (생 략) |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br>1.·2. (현행과 같음)<br><삭 제><br>4. (현행과 같음)<br>② ~ ⑤ (현행과 같음) |